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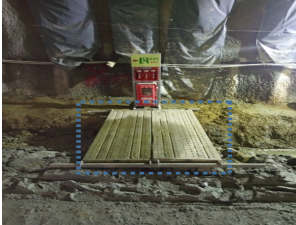

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[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(2공구)]

- 점검일시 : 2020.01.28 (화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이상현, 김동수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○ 추락재해 예방 - 종점부터널 초입부 분전함 앞 견고한 자재로 안전난간을 보완하기 바람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		2020.01.29	
		- 종점부터널 초입부 분전함 앞 단관파이프 전용 클램프 사용 안전난간 설치	
○ 가설통로 안전 - 종점부터널 초입에 비치된 소화기는 배수로 건너편에 있어 이용시 근로자 전도 우려가 있으니 조치하기 바람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		2020.01.29	
		- 종점부터널 배수로 건너편에 설치된 소화기 건너다리 설치하여 전도위험 예방	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 - 본선터널 철근대차 안전난간에 스트랩 자재 등을 걸어 놓을 경우 낙하사고 우려가 있음에 조치하기 바람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		2020.01.29	
		- 본선터널 철근대차 안전난간에 걸어 놓은 스트랩 자재 이동조치 완료	

<p>○ 터널 안전</p> <p>- 본선터널 체수된 부분은 배수하여 관리하기 바람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)</p>		<p>2020.01.29</p> <p>- 본선터널 체수된 부분 Con'c 타설 및 배수 조치 후 안전발판 설치 완료</p>	
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본선터널 방치된 분전함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철거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대로 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람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6(분전반)</p>		<p>2020.01.29</p> <p>- 본선터널 방치된 분전반 터널 벽면에 이동 설치 완료</p>	
<p>○ 전도재해 예방</p> <p>- 본선터널 측면에 기울여 놓은 철근은 전도우려가 있으므로 조치하기 바람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</p>		<p>2020.01.29</p> <p>- 본선터널 측면에 기울여 놓은 철근은 하단으로 이동조치 완료</p>	
<p>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</p> <p>- 공기정화시설 상부 자재 및 쓰레기 적치장에는 화재대비 소화기를 비치하기 바람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(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</p>		<p>2020.01.29</p> <p>- 공기정화시설 상부 자재 및 쓰레기 적치장에 화재대비 소화기 20kg 비치 완료</p>	
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감리 안전점검 일지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</p>		<p>2020.01.29</p> <p>- 관리 상태 양호</p>	